

인천지방법원 2022. 4. 28 선고 2021가단2610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, 김지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14.

판 결 선 고 2022. 4. 28.

주 문

1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/7 지분에 관하여 2020. 1. 12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제1항 기재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/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양승우

별지

1) 원고는 2022. 3. 4. 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“2020. 7. 22.”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청구취지로 기재하였다.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일자는 2020. 1. 12.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원고 또한 소장에는 위 분할협의 일자를 “2020. 1. 12.”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설했다.